

오산시 모범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

제정 2010년 12월 31일 조례 제1121호
전부개정 2023년 11월 1일 조례 제2101호
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24년 12월 20일 조례 제2231호
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모범납세자의 선정대상,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모범납세자”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재정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.
- ② “성실납세자”란 「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.
- ③ “유공납세자”란 「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24. 12. 20]

제3조(선정대상) 시장은 선정기준일(매년 1월 1일)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,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지방세 납부건수가 10건 이상(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, 주민세 개인분,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,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)이고 납부액이 개인은 5천만원 이상, 법인은 1억원 이상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2. 20>

제4조(선정)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 선정대상 중 시에 대한 재정 확충에 기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「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. <개정 2024. 12. 20>

오산시 모범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

② 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선정대상명부(별지 제1호서식)
2. 공적조서(별지 제2호서식)

③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선정할 수 없다.

제5조(인증)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표 제1호에 따른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.

1.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- 가. 선정일로부터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
- 나.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자문서비스 제공 등
- 다. 10만원이하의 경품(지역화폐 등)
- 라.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- 마. 「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 제14조의2에 따른 입장료의 감면
- 바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경품(지역화폐 등)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제1호 나목에서 바목까지의 경우 「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」의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

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2024. 12. 20]

제7조(지원의 배제)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에게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기록보전)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·단체·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

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5년간 기록·보존해야 한다.

부칙 〈2023. 11. 1 조례 제2101호 전부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,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(다만,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)

부칙 〈2024. 12. 20 조례 제2231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공 적 조 서

(앞면)

성 명 (법인명)	(한 자)	성별	
생 년 월 일 (법인등록번호)			
주 소 (법인소재지)			
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			
공 적 요 지			
조 사 자			
소 속		직 위	
직 급		성 명	
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 년 월 일 [추천관] 오 산 시 장 직인 </div>			

(뒷면)

주요 경력 사항	
년월일	경력사항 상세
과거 포상 기록	
년월일	이 력
공 적 사 항	

[별표 제1호]

제 호
모범납세자 인증서
○ ○ ○
귀하(사)는 「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○○○○년도 오산시 모범납세자임을 인증합니다.
년 월 일
오산시장 직인

※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모범납세자 현판

(단위 : 밀리미터)

○○○○년 오산시 모범납세자 납세자명
오산시장 직인

○ 규격 : 가로 300mm × 세로 210mm

※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